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선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37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물가연동제 도입 등(박선원 의원안, 박범계의원안)	3

I. 개요

1. 박선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3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선원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7. 11.

(3) 회 부 일 : 2024. 7.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있어, 과표가 물가 및 소득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실질임금의 변동없이 명목임금의 증가만으로도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짐.

이에 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절반 이상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어 명목소득이 올라도, 세부담 기준을 함께 같은 비율로 조정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부담 증가, 형평성의 왜곡 등을 방지하고 물가상승분을 소득세에 반영하고 있음.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가령 중산층 대부분이 속해 있는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6,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조정할 경우 연 6,000만원(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 후) 소득자 기준 약 99만원의

세부담이 완화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감세 효과를 부여할 수 있음.

이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조정하여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함.(안 제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물가연동제 도입 등(박선원 의원안, 박범계의의원안)

현행	박선원의원안	박범계의원안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제14조 및 제55조)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산출세액 계산 시 물가조정계수 반영	□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물가연동지수 반영																																																						
○ 구간별 세율	○ 구간 상향조정	○ (현행과 같음)																																																						
<table><tr><th>종합소득 과세표준</th><th>소득 세율</th></tr><tr><td>~1,400만</td><td>6%</td></tr><tr><td>1,400만~5,000만</td><td>15%</td></tr><tr><td>5,000만~8,800만</td><td>24%</td></tr><tr><td>8,800만~1.5억</td><td>35%</td></tr><tr><td>1.5억~3억</td><td>38%</td></tr><tr><td>3억~5억</td><td>40%</td></tr><tr><td>5억~10억</td><td>42%</td></tr><tr><td>10억~</td><td>45%</td></tr></table>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세율	~1,400만	6%	1,400만~5,000만	15%	5,000만~8,800만	24%	8,800만~1.5억	35%	1.5억~3억	38%	3억~5억	40%	5억~10억	42%	10억~	45%	<table><tr><th>종합소득 과세표준</th><th>소득 세율</th></tr><tr><td>~1,500만</td><td>6%</td></tr><tr><td>1,500만~6,000만</td><td>15%</td></tr><tr><td>6,000만~1억</td><td>24%</td></tr><tr><td>1억~1.5억</td><td>35%</td></tr><tr><td>1.5억~3억</td><td>38%</td></tr><tr><td>3억~5억</td><td>40%</td></tr><tr><td>5억~10억</td><td>42%</td></tr><tr><td>10억~</td><td>45%</td></tr></table>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세율	~1,500만	6%	1,500만~6,000만	15%	6,000만~1억	24%	1억~1.5억	35%	1.5억~3억	38%	3억~5억	40%	5억~10억	42%	10억~	45%	<table><tr><th>종합소득 과세표준</th><th>소득 세율</th></tr><tr><td>~1,400만</td><td>6%</td></tr><tr><td>1,400만~5,000만</td><td>15%</td></tr><tr><td>5,000만~8,800만</td><td>24%</td></tr><tr><td>8,800만~1.5억</td><td>35%</td></tr><tr><td>1.5억~3억</td><td>38%</td></tr><tr><td>3억~5억</td><td>40%</td></tr><tr><td>5억~10억</td><td>42%</td></tr><tr><td>10억~</td><td>45%</td></tr></table>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세율	~1,400만	6%	1,400만~5,000만	15%	5,000만~8,800만	24%	8,800만~1.5억	35%	1.5억~3억	38%	3억~5억	40%	5억~10억	42%	10억~	45%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세율																																																							
~1,400만	6%																																																							
1,400만~5,000만	15%																																																							
5,000만~8,800만	24%																																																							
8,800만~1.5억	35%																																																							
1.5억~3억	38%																																																							
3억~5억	40%																																																							
5억~10억	42%																																																							
10억~	45%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세율																																																							
~1,500만	6%																																																							
1,500만~6,000만	15%																																																							
6,000만~1억	24%																																																							
1억~1.5억	35%																																																							
1.5억~3억	38%																																																							
3억~5억	40%																																																							
5억~10억	42%																																																							
10억~	45%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 세율																																																							
~1,400만	6%																																																							
1,400만~5,000만	15%																																																							
5,000만~8,800만	24%																																																							
8,800만~1.5억	35%																																																							
1.5억~3억	38%																																																							
3억~5억	40%																																																							
5억~10억	42%																																																							
10억~	45%																																																							
<신설>	○ 산출세액 계산시 물가 조정계수 반영 해당연도 소비자물가 지수 물가 조정 계수 = 기준연도 소비자물가 지수 - 해당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은 현행과 같음 - 세율구간별 종합소득과세표준 = 구간별 종합소득과세표준*물가조정계수	○ 과세표준 계산시 물가 연동지수 반영 기준연도 물가지수 물가 연동 지수 = 해당연도 물가지수 - 해당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과세표준*물가연동지수 - 세율구간별 종합소득과세표준은 현행과 같음 *물가연동지수>1이면 미반영																																																						

* 박선원의원안 2024. 7. 11. 제출(의안번호 1637), 박범계의원안 2024. 8. 19. 제출(의안번호 2952)

□ 2건의 개정안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명목소득이 아닌 실질소득에 부합한 소득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선원의원안은 ① 최저과세표준을 1,500만원으로 하고, 이후 과세표준구간을 1,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15%),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4%)로 조정하면서 ② 세율 구간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물가조정계수를 반영하여 산출세액 계산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안은 현행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물가연동지수를 곱한 값¹⁾을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정하려는 것임.

□ 현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 종합소득(명목소득) 과세표준을 8개 구간으로 나누고 과세표준 금액 상승에 따라 구간별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세 체계로 이루어짐.

먼저 소득세율의 연혁을 살펴보면, 1949년 법 제정시에는 17개 과표 구간에 최고세율은 65%였고 시행연도를 기준으로 1975년 70%에서 1989년 50%, 1994년 45%, 1996년 40%, 2002년 36%, 2005년 35%로 2000년대까지 최고세율이 계속적으로 인하되는 추세였는데, 2012년 이후부터는 종합소득금액 8,800만원 초과 구간이 세분화되

1) 물가연동지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현행법과 같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함

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되고 있는 추세임.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및 최고세율은 2011년 종합소득금액 8,800만원 초과·35%에서 2012년 종합소득금액 3억원 초과·38%로 인상되었고,

2014년에는 최고세율 구간(38%)이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인하되었다가, 이후 다시 2017년에 5억원 초과 40%, 2018년에 5억원 초과 42%로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으며, 이후 2021년부터는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어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되었음.

마지막으로 2023년에는 하위 2개 소득구간의 확대 조정이 이루어졌음.

[2009년~2023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추이]

연도 구 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	2017	2018~ 2020	2021~ 2022	2023~
~1,200만원	6%							6%
1,200만원 ~1,400만원	16%	15%						
1,400만원 ~4,600만원							25%	24%
4,6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8,800만원	24%							

연도 구 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6	2017	2018~ 2020	2021~ 2022	2023~
8,800만원 ~ 1.5억원	35%	35%	35%	35%				35%
1.5억원 ~ 3억원				38%	38%	38%		38%
3억원 ~ 5억원			40%			40%		
5억원 ~ 10억원			40%		42%	42%	42%	
10억원 ~						45%	45%	

주: 귀속소득 연도 기준

□ 먼저 ① 최저과세표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계속된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조세의 실질부담을 조정하는 효과가 기대됨.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하위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²⁾이 이루어졌지만, 물가 상승 속도를 고려할 때 서민들의 실질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정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	83.9	89.9	93.0	94.9	97.6	99.5	102.5	111.6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2)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2021년 ~ 2022년)	종합소득과세표준(2023년)
6%	~ 1,200만	~ 1,400만
15%	1,200만 ~ 4,600만	1,400만 ~ 5,000만
24%	4,600만 ~ 8,800만	5,000만 ~ 8,800만
35%	8,800만 ~ 1.5억	<좌 동>
38%	1.5억 ~ 3억	
40%	3억 ~ 5억	
42%	5억 ~ 10억	
45%	10억 ~	

□ 다만, 과세표준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최저세율구간 상향 조정은 저소득 면세자의 비율을 높여 소득세 과세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소득자 중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 비율은 2022년 기준 33.6%로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액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면세자가 다시 증가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개혁의 원칙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

(단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48.1	46.8	43.6	41.0	38.9	36.8	37.2	35.3	3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둘째, 과세표준 조정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세부담 완화에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초과누진세율³⁾ 구조를 지닌 현행 소득세 체계에서 개정안과 같이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할 경우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는 세부담에 변함이 없는 반면 상대적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조세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려는 입법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3) 과세표준 증가에 따라 일정 구간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② 매년 과세표준 설정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이른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려는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인정할 수 있음.

첫째, 현행 소득세 체계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조세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실질 조세부담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야 하지만, 매년 법률 개정 절차를 거칠 경우 과도한 입법 및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법제화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둘째, OECD 회원국 중 약 58%의 국가가 물가연동 세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OECD 회원국 중 미국, 캐나다 등 22개국에서 물가연동 세제를 적용하고 있음⁴⁾.

미국은 1981년부터 물가 상승에 따라 납세자가 더 높은 세율 구간을 직면하게 되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등 조세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고,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산정된 생계비조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비교연구”, 2022

정지수⁵⁾를 활용하고 있음.

캐나다는 소득세율 구간 등을 산출할 때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 비율인 물가연동률⁶⁾을 전년도 수치에 곱하는 방식의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음.

□ 다만,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하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세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과세표준 조정에 따라 면세자가 증가하는 등 세수 감소가 우려됨.

박선원의원안은 해당연도 과세표준 산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에 해당 연도의 물가조정계수를 곱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상승하게 됨.

이에 따라 소득세 저율 구간이 확대되면서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현재도 면세자 비중이 높은 상황(2022년 기준 33.6%)에서 추가적인 면세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득세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박범계의원안도 마찬가지로 물가가 상승하여 물가연동지수가 1보다 작을 경우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5)

$$* \text{생계비조정지수} = \frac{\text{해당연도 소비자물가지수}}{\text{기준연도 소비자물가지수}} - 1$$

6)

$$* \text{물가연동률} = \frac{\text{전년도 9월 30일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text{전전년도 9월 30일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따라 더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하고 있는 고소득층에 더 큰 세제 혜택이 귀속되고 추가적인 면세자가 발생할 수 있음.

둘째, 호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물가연동제를 폐지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호주의 경우 1976년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였으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1981년 폐지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1988년 물가연동제 도입여부를 검토했으나, 물가 하락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 우려로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셋째, 물가연동제의 도입은 적정 조세부담 유지를 위한 입법비용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으나, 물가상승률 외의 다양한 조세정책적 결정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자동조정장치가 반드시 합목적적인 정책수단인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